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34호  
2021. 4. 23.(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차 례

###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38호) ..... 1

### 공 고(3)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1-442호) ..... 2
- 2021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신청 공고(공고 제2021-467호) ..... 3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471호) ..... 4

### 기 타(1)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7

공 람									
--------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중리동 248-8	계족로511번길 75	2021. 4. 23.	건물신축	계족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1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중리동 250-1	홍도로 136	2021. 4. 23.	건물신축	동구 홍도동과 대덕구 중리동을 지나는 도로로서 시작 지점인 홍도동의 명칭을 반영
중리동 404-1	한밭대로1117번길 40	2021. 4. 23.	건물신축	한밭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1,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탄진동 245-1	신탄진로738번길 69	2021. 4. 23.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7,3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87번지 상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와동 87	72.09㎡	4.0m	51.1m	허영욱 주경라

####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467호

## 2021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신청 공고

2021년 대덕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신청 안내/대상요건 충족자
2. 대상자
  - 가. 2002년 7월 15일 이전부터 대덕구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
  - 나. 위 조건 만족 대상자로부터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자로 상속 및 증여를 받기 전부터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자 (전부 증여와 상속은 1회에 한함.) 단,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덕구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도 포함한다.
3. 신청기간 : 2021. 5. 14. (금) 18:00까지
4. 접수처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별관4층)  
※ 코로나19로 인해 청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필수, 별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담당자 요청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전부증여 및 상속에 한함), 전출사유서(전출자에 한함), 영업신고서(식품접객업 대상자에 한함) 등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정성희 (☎ 042-608-6872). 끝.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체육시설업자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1. 4. 23.(금) ~ 2021. 5. 6.(목) (14일간)
2. 처분제목: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3. 처분일: 2021. 5. 7.(금)
4. 처분원인: 체육시설업 폐업통보 미이행
5.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6. 처분대상

업종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처분예정사항
당구장업	파랑새당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32번길 15, 3층 (와동)	이○호	직권폐업

#### 7. 문의처

가.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나. 담당부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042-608-6273, FAX 042-608-3823)

## 8.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 5. 6.(목)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업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042-608-62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60호(2020.06.02.)로 사업시행인가 된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 및 물건(영업권)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 및 물건조서(영업권)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사업 개요

- ▶ 사업 명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사업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41-11번지 일원
- ▶ 사업 면 적 : 57,936㎡
- ▶ 사업 시행자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

- ▶ 보상대상 - 2020년 12월 15일 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조합원 및 구역 내 영업권자 (일부 조합원은 일정면적 이하로 현금 청산자가 됨)

▶토지 등 :

대화동 35-200, 35-203, 35-204, 35-731, 35-732, 35-205, 35-1110, 35-210, 35-349, 35-441, 241-18, 35-466, 35-470, 35-473, 35-1212, 236-15, 35-479, 35-481, 35-489, 35-490, 35-491, 35-492, 35-620, 35-495, 35-597, 35-647, 241-22, 35-495, 35-497, 241-17, 35-498, 35-515, 35-516, 239-8, 239-9, 35-518, 35-520, 35-524, 236-4, 236-9, 35-525, 35-537, 35-557, 35-558(제1호), 35-559, 35-560, 35-1111, 35-562, 35-607, 35-617, 35-621, 35-641, 35-645, 35-646, 35-652, 35-653, 35-663, 35-665, 35-663, 35-666, 35-667, 35-672, 35-693, 35-694, 35-726, 35-947, 35-1015, 35-1070, 35-1088, 241-25, 35-1112, 235-4, 236-3, 236-12, 236-12, 236-8, 237, 238-1, 239-5, 239-8, 35-515, 239-9, 241, 241-24, 241-11, 241-12, 241-13, 241-16, 241-19, 241-23, 243-2, 243-3, 243-5, 243-13, 243-15, 246-11, 246, 246-7, 246-2, 250-1, 247-5, 247-7, 247-8, 247-14, 247-15, 248-2, 250-2, 250-3, 250-4, 250-7, 250-10, 250-13, 250-8, 250-11, 250-14, 250-15, 250-18, 250-20, 251, 254-30, 254-32, 580-2

▶영업권 :

대화동 236, 237, 238, 240, 243, 238-2, 238-9, 238-4, 238-5, 239-15, 239-7, 241-11, 243-1, 243-2, 246-5, 249-2, 250-12, 250-13, 250-20, 250-4, 254-31, 35-201, 35-203, 35-204, 35-208, 35-215, 35-465, 35-473, 35-478, 35-480, 35-491, 35-525, 35-562, 35-628, 35-630, 35-632, 35-676, 35-678, 35-697, 35-730, 35-664, 239-2

※ 위 지번상 지장물 및 구역내 영업권 일체 포함

### 3. 열람 및 이의신청

- ▶ 열람기간 : 2021년 4월 26일 ~ 2021년 5월 14일까지(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 열람장소 : 조합 사무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8길 9(대화동 35-461)

(전화 :042)635-6111 팩스 : 042)635-6115)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042) 608-5373)

- ▶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중 서면으로 제출
- ▶ 기타 : 열람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열람 시 위임장, 인감증명지참)

### 4. 보상시기

- ▶ 2021년 7월 이후 예정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통보)

## 5. 보상의 방법 및 절차

-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에 해당 시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을 공탁합니다.
-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공탁
- ▶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명에 대해서만 동의 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

-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종운

